

# 정책자금상담센터 컨설팅 안내



# 영업권/특허권평가

## ■ 영업권 평가

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,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 가능

### 개요

영업권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업결합 시 취득자(매수회사)가 지불한 이전 대가가 피취득자(피매수회사)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과 기업이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것입니다.

**즉, 영업권은 경쟁기업에 비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** 이러한 영업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우수한 경영진이나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표, 지리적인 위치, 고객의 충성도, 특수한 생산기법, 영업상의 비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. 앞의 영업권에 대한 정의에서 전자를 매수영업권이라 하고 후자를 자기개발영업권이라고 하는데, K-IFRS에서는 매수영업권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매수영업권은 객관적인 거래의 대가로서 인식된 것이므로 취득의 인식시점과 취득대가가 명확하지만, 자기개발영업권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따라서 사업 결합시에 인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하지만 기업 내부의 영업권 개발을 위해 발행한 모든 원가는 발생 시점에서 기간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,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. 하지만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될 수 없습니다.

## ■ 영업권 가치평가 방법

### ① 총괄평가법

총괄평가법은 사업결합 시에 지불한 이전 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이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.

총괄평가법의 논리는 피취득자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영진의 능력이나 생산기술상의 우위 등의 무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취득자가 가진 순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영업권은 피취득자가 가진 무형적인 힘이며, 이를 바탕으로 취득자가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.

#### 총괄평가법 예

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인인 회사를 6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|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차변 자산 | 1,000,000 | 대변 부채 | 500,000 |
| 영업권   | 100,000   | 현금    | 600,000 |

위의 회계처리에서 보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의 회계장부에 모두 기록하고, 지불한 대가와 차이를 영업권으로 기록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. 만약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적은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그 차액을 부의영업권이라 하는데, 이는 사업결합일에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.

### ② 초과이익할인법

초과이익할인법은 이론적인 영업권 가치의 측정법입니다. 즉, 영업권의 본질을 경쟁업체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에 있는 것으로 보고, 이러한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하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

**초과이익할인법에 의해 영업권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**

- ①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동종산업의 정상이익률을 곱해 정상이익을 구합니다.
- ② 피취득자의 과거자료를 분석하여 피취득자가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예상이익을 구한다.
- ③ 예상이익에서 정상이익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구한다.
- ④ 초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자본화한 영업권의 가치 : **영업권의 가치 = 초과이익 \* 자본화계수**

# 영업권/특허권평가

## 요약

### ①총괄평가법 : 사업결합시 영업권의 평가방법

- (1) 의의 : K-IFRS에 의한 영업권
- (2) 방법 :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(자산 공정가치 - 부채 공정가치)와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
- (3) 회계처리 :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의 회계장부로 이전시키고, 이전대가를 대변에 기록하여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기록

### ②초과이익할인법 : 이론적인 영업권 평가방법

- (1) 의의 : 영업권의 본질에 근거한 방법
- (2) 방법 : 피취득자의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영업권 가치를 산정
- (3) 과정
  1. 정상이익 =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액 \* 정상이익률
  2. 예상이익 = 피취득자의 과거 당기순이익의 평균
  3. 초과이익 = 예상이익 - 정상이익
  4. 영업권 = 초과이익 \* 자본화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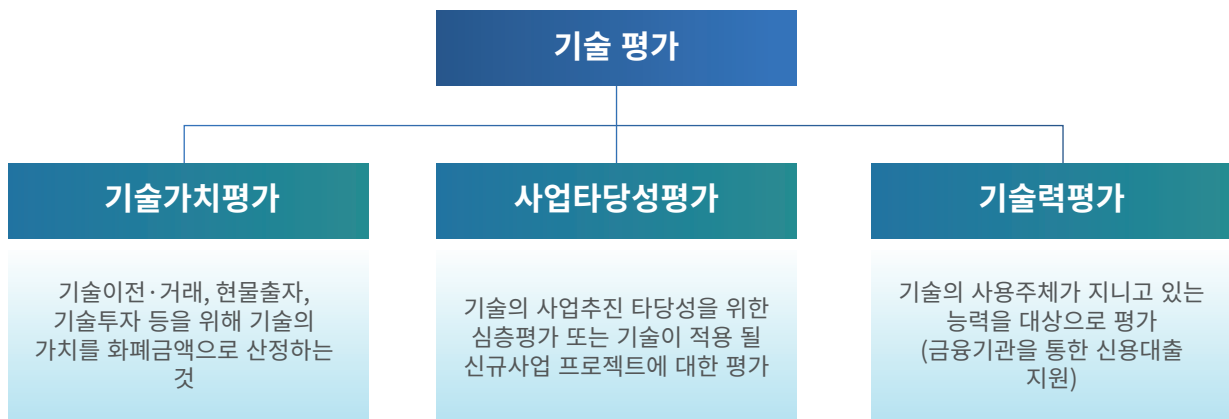
## ■ 특허권 평가

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,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 가능

### 평가의 의의

대상기술의 기술성,시장성,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, 등급,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

### 기술평가의 종류



### 평가의 목적

1. 거래 : 기술의 구입,판매, 라이선싱(Licensing)을 위한 거래 가격산정
2. 금융 :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 담보 설정
3. 세무 : 기술의 기증, 처분,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
4. 전략 : 기업의 가치 증진, 기술 상품화, 분사(Spin-off)기타 장기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
5. 청산 :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, 채무상환 계획 수립
6. 소송 : 특허권 침해, 채무 불이행,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등의 손해액 산정

# 영업권/특허권평가

## ■ 기술가치평가 (사업타당성평가)

### 교육 프로그램

| 종류   | 상세내용  |
|------|---|
| 평가용도 | 거래, 금융, 세무, 전략, 청산, 소송(사업타당성은 전략만)                |
| 평가비용 | 평가기간, 평가인력, 평가범위(지역, 기술 등),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 |
| 평가기간 | 8주 내외   |
| 평가위원 | 박사, 회계사, 변리사 등 전문위원 4~5인으로 구성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결과 | 권리성, 기술성, 사업성, 시장성(국내외)분석 등 기술가치가액 산정 또는 사업타당성 검토 |

## ■ 기술가치평가 (사업타당성평가) 절차

### 신청

- 전화, 이메일, 직접방문을 통한 신청
- 신청서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접수

### 과정개설 (교육기간)

- 접수자료의 적정성여부 검토
- 기술성 및 사업성의 개략적인 검토
- 분야별 평가팀 구성(특허법률, 기술분야, 사업분야 전문가)

### 본평가 (분야별 전문가)

-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
- 기술성 분야 (이/공학분야 박사, 기술사 등)
- 사업성 분야 (경영/회계분야 박사, 공인회계사 등)
- 특허분야 (특허심사관, 변리사 등)
- 기술이전분야 (기술거래사 등)

### 자문

-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평가심의

- 기술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내용심의
- 평가내용에 의견의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

### 평가결과통보

- 기술적가치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